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1,038,695	15,331,161
일반회계	492,396,700	14,771,901
특별회계	18,641,995	559,260
기타특별회계	18,641,995	559,2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25,190	111,756
주택사업특별회계	24,302	729
의료급여특별회계	1,223,960	36,719
자활기금특별회계	1,691,766	50,753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250,628	97,519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455,689	13,6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00	99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5,933,980	178,019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40,000	1,20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197,787	65,93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5,393	2,86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